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89

발의연월일: 2025. 5. 13.

발 의 자:이인선・박정하・강선영

성일종 • 박준태 • 김정재

고동진 • 조정훈 • 김성원

강민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,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.

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,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74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4조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	제74조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		
금산입특례) ① 다음 각 호의	금산입특례) ①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			
대해서는 <u>2025년 12월 31일</u> 이	<u>2030년 12월 31일</u>		
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			
「법인세법」 제29조를 적용하			
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			
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			
사업(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			
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			
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			
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			
업만 해당하고, 제6호의 체육단			
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			
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			
한다)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			
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			
입할 수 있다.	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	4		
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			
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	

지역에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(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인세법」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
	- <u>2030년</u>	12월
31일		